
**「2024년도 종합유선방송사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
제 안 요 청 서**

2024. 4.



디지털통신융합본부 디지털통신융합사업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제안 요청 내용	3
III.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5
IV. 입찰안내	21
V. 별지서식	22

사업개요

1. 사업명 : 종합유선방송사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
2. 사업금액 : 금404,580,000원(금사억사백오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15일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태풍, 장마, 코로나19, 화재 및 정보통신사고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추세
 - 재난방송 횟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보 전달체계 미흡
- 긴급입찰 사유
 -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자동자막 송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사업임
 - 8VSB 채널자막키어 제작·납품 및 시스템 연동 테스트 일정(9월)에 맞추어 입찰공고 기간 조정이 불가피함
 - 신속한 디지털 재난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국가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발주가 필요함

5. 추진 목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재난피해 최소화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도입을 통해 재난정보 방송 지연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송출시간 단축 등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 자동자막송출시스템(8VSB 채널자막키어 등) 단계적 지원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II.제안요청내용」 참조

사업구분		사업대상*	지역	지원내역**
종합유선방송	MSO	HCN, CMB, SK브로드밴드	서울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VSB 채널자막키어 · 8VSB 채널자막키어 프레임 · 8VSB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 · 8VSB용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
계		3개 사업자		

* MSO별 지원은 8VSB 자막키어 설치 및 운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MSO별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내역 일부 조정 가능

7. 추진일정 및 절차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4월	조달청	입찰공고
↓	↓		
제안접수마감	4월	조달청	제안서 접수마감
↓	↓		
평가.선정	5월 or 6월	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
↓	↓		
계약체결	2024.6월 중	조달청, 제안사	사업자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I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사항

□ 사업개요

- 종합유선방송사인 MSO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송출 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MSO별 시스템 구성과 운영현황을 고려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장비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재난 데이터 연동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의무가 있으나 수동 자막송출방식으로 인한 송출 지연, 정보/채널 누락 등 재난방송 전달에 어려움 발생
 - ※ 시스템(EDBS, 과기정통부)→종합유선방송사(PC화면)→자막 재가공(방송사)→송출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재난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지원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업목표

- MSO별 운영 중인 8VSB 채널 중 상위 70%가 재난방송이 송출되도록 8VSB 채널자막키어, 자막키어 프레임 등 시스템 구축 물품 지원
- MSO에 설치된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동이 가능하고,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자막송출이 가능한 키어 관리서버 지원
- 일부 MSO에서 운영중인 8VSB용 송출서버(트랜스코더)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

□ 사업추진체계

○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주요 역할

구 성	주 요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VSB 채널자막키어 지원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 추진 관련 관리·감독 총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VSB 채널자막키어 지원, 구축 지원 사업 수행 - 사업 세부 수행계획 수립 - 참여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방송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재난방송 운영 협력
사업수행 참여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VSB 채널자막키어 방송사별 구축 - 장비 공급과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 - 장비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 시행

□ 주요 과업내용

가. 납품 및 설치 지원사항

1) 8VSB 채널자막키어 : 다채널 IP형식 디지털로 압축된 방송신호의 트랜스코딩* 과정에서 재난자막을 삽입해 주는 장치

- 8VSB 송출방식에서 각 채널마다 자막을 표시하는 장치로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표출하는 기능 보유

* Transcoding : 압축된 방송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디지털→디지털)

- 정부 재난정보시스템의 재난정보를 자동자막 송출서버로 수신하여,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방송화면에 재난자막 삽입 및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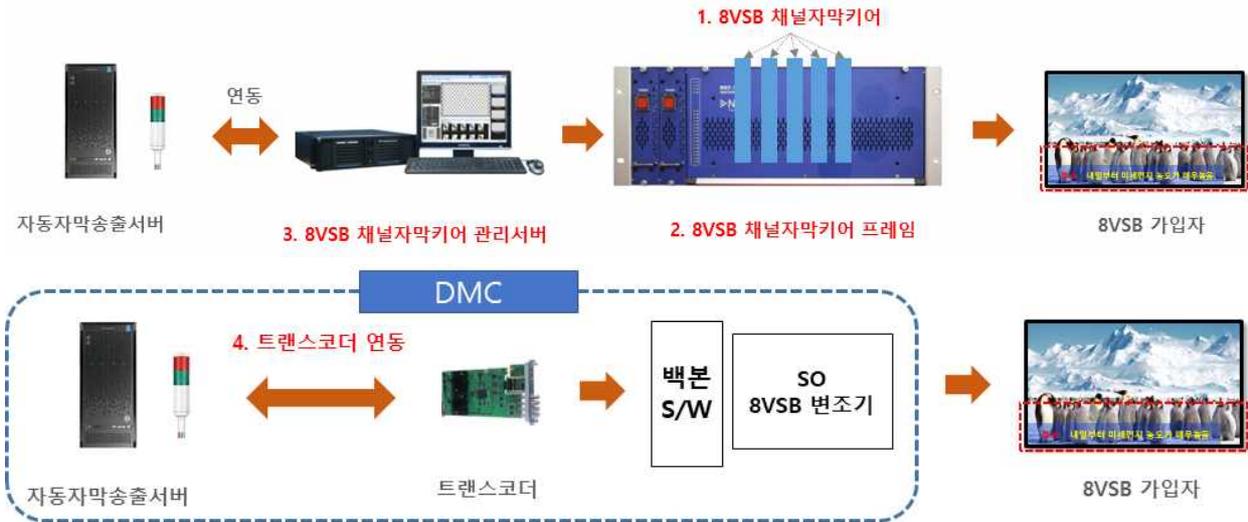
2) 채널자막키어 프레임 : 8VSB 채널자막키어 모듈을 실장하기 위한 장치로 자막키어별 네트워크 관리 및 데이터 스위치 기능 수행

3)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 :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동*이 가능하며,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자막을 송출하는 자막키어 관리서버

* MSO별 서로 상이한 시스템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기반 연동 지원

4) 트랜스코더 기능추가 : MSO에서 운영중인 8VSB용 송출서버 (트랜스코더)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

< 8VSB 재난방송 송출 체계 중 납품·설치 사항 >



나.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

사업 구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8VSB 채널자막키어*	채널자막키어 프레임*	채널자막키어 관리 서버*	트랜스코더 기능 추가	참고사항
						자막키어 제조사
MSO	SK브로드밴드	44채널	4식	1식	.	네스테크놀로지
	HCN	.	.	.	○	슈마비전
	CMB	.	.	.	○	네스테크놀로지
합계	3개사	44채널	4식	1식	2개사	

* 지원 수량은 MSO별 운영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장비 설치·연동을 위한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등)는 해당 MSO에게 제공받아 사용

다. 납품 제품 규격 및 지원사항

1) 8VSB 채널자막키어

○ 일반규격

- IP 방식 방송 Stream의 트랜스코딩과 영상 스케일링, 그래픽 데이터 삽입을 동시 지원
-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 복수의 채널에 동시 및 개별 송출이 가능
- 장치 장애 시 Hot Swap에 의한 신속한 복구기능 제공
- MPEG2 및 H.264 포맷 상호 변환 지원

○ 하드웨어 부분

- Input Video : MPEG2 / H.264 / 1080i 59.94
 Audio : All Format
- Encoding Video Format : MPEG2 / H.264
 Video Transcoding : 1920 x 1080i
 Audio Transcoding : MPEG1, AAC
- 기타 설치공사 포함, 전원 이중화 제공

※ “나.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

2) 8VSB 채널자막키어 프레임

○ 일반규격

- Gigabit Ethernet Input, RJ45 interface
- 고화질의 최신 Codec Chip 적용
- 자막키어 Module 정보를 Network으로 조정 및 감시 가능

○ 하드웨어 부분

- Voltage : 100V ~ 220V, Free Volt 50/60Hz
- Power Supply : Redundant, Separate AC , Over Voltage Protection
- Network IGMP Support : V1, V2

※ “나.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

3) 8VSB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

○ 일반규격

- 자체자막 송출 기능이 있는 CG모듈을 통해서 방송 Stream에 문자 삽입을 위한 송출 스케줄이나 서식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채널에 송출
- 그룹, 채널별 자막 스케줄 등록, 편집 등 다양한 관리기능 제공
- 8VSB 채널자막키어를 원격 제어, 모니터링 등 장비 관리기능 제공
- Http 호출방식을 사용하여 자막정보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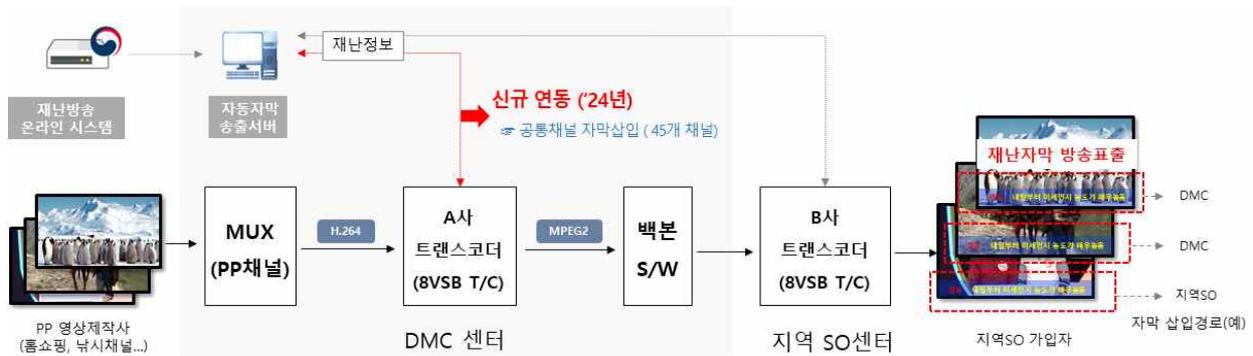
○ 하드웨어 부분

- OS Windiows 10 pro 이상
- CPU AMD RYZEN7 4th Gen, 5800x 이상, CPU core 8개 이상
- SSD Crucial Micron BX500 250GB SSD 이상
- Memory 32GB 이상
- Power 마이크로닉스 Classic 2 Gold Fullmodular 1050W 230V 이상
- Network 이더넷 기가 포트
- 기타 설치공사 포함, 전원 이중화 제공

※ “나.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

4) 트랜스코더 기능 추가

- DMC에서 운영중인 8VSB용 송출서버(트랜스코더)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



< MSO 8VSB 송출 구조 및 트랜스코더 연동지원(HCN) >

- 자동자막 송출서버 ↔ DMC 내 트랜스코더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자막으로 변환 및 자동 삽입 옵션 지원
- 기능 적용 시 자동자막 송출서버에 연동된 설비나 서비스 등 기존 운용 중인 장비에는 문제가 없도록 적용

구 분	주요 사항
기능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 스케줄러 및 자막 채널 설정 기능 추가 등 UI 관리 ○ 자막 송출 로그 저장 및 추출 기능 ○ 자막 수정 및 중단 기능 ○ 자막 크기, 폰트, 백그라운드,(최대 800자), 글자/배경색 설정

※ 상기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MSO와 협의 후 반영 지원

라. 납품 시 기본지침 사항

1) 방송시설 설치 일반

- '장비 설치'라 함은 설치장소 상면 협의 및 확보 후 지정된 위치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입출력 신호용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모두를 연결하는 것을 말함
- 공간별 구축 장비의 케이블 및 연결선, 부품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함
- 모든 장비에는 설치 후 명판(Name Plate)를 부착하여야 함
- 신호선 및 전원선 등은 팽팽히 당겨지지 않도록 10~20%의 여유를 두고 결선하여야 함
- 배선에 사용하는 각 케이블은 영상, 음향, 전원 등으로 분류, 식별이 용이하게 색상을 달리한 Cable을 사용해야 하며, 각 신호원과 종단부에 이르기까지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라벨링 부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Noise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지처리(Loop 방지)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장비 설치공사는 각종 도면, 설명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함
- 공사 도중 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에 사용될 기기 또는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시스템 이전 또는 구축 도중에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별도의 지시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장비는 수직, 수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배선 및 부품의 조립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반드시 현장 감독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함

-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초기 전원투입 시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UTP 네트워크 케이블은 CAT.6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할 것이며, 양단 연결 부위에도 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모든 배선은 가지런히 포설한 후 선간은 케이블 Tie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케이블은 전원선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곡률반경을 갖도록 처리하여야 함
- 커넥터 접속작업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공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함
- 배선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도면을 확실히 숙지한 후 결선하여야 함

2) 시험

- 장비 설치 및 연동작업을 완료 후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음

3) 하자보수

- 납품 설치된 물품은 검수완료 후 1년간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최단시간 내 재난정보 송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수행 지침

□ 착공계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착공계 2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
 - 대표자 각서 2부
 - 투입인원 명단 2부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2부

□ 납품·설치 완료검사(검수)

- 납품·설치 완료검사는 납품·설치·연결이 완료된 후 납품·설치 완료검사 7일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요청서 2부
 - 운영 매뉴얼 2부
 - 납품확인서 2부
 - 검수 세부내역 및 사진첩 2부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 과업 보고

- 계약자는 효율적인 과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설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및 협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의 변경 등

- 사업시행 중에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의 중단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 의해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제출기한	비고
착수시	· 착공계 · 사용인감계 · 대표자 각서 · 투입인원 명단 - 참여자 명단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2 2 2 2 2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시	· 납품확인서(납품계) · 납품 물량 내역서 · 테스트 결과서 · 운영설명서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2 2 2	검수요청일로부터 7일 전	
검수시	· 준공검사원 · 준공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 사진첩 · 하자보수 지침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2 2 2 2	사업완료일 전까지	

□ 사진제출

○ 계약자는 사업 진행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설치착수 전, 후의 현장사진
- 설치공사의 주요사항
- 설치완료 후 육안에 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정
- 책임자가 촬영을 지시한 사항

3. 기타 요청 사항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 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업무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안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저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함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 A4 가로, PDF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KS, 관련 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 제안서 표지는 별지에 정해진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고 표지에 사업 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III.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IV.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V. 첨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 “작성 항목”은 참고사항이며, 제안사가 작성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목차 구성이 가능함

□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구비 서류

번호	구분	규격	내용	분량	비고
1	제안서	A4	정량적 제안서 (정량평가자료 및 V. 별지서식)	-	
		A4	정성적 제안서	-	
2	발표자료	A4	제안발표자료	-	
3	기타서류	A4	필요시	-	

2. 제안서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 (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점)	경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10점

(2) 정성평가 (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점)	사업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5점
	관련분야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5점
사업수행 (30점)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5점
	수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15점
	수행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10점
사업관리 (15점)	사업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사업 수행 활동의 적절성 ○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10점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5점
제품 적합성 (15점)	제품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모두 구현여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 	10점
	제품 유지보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조직의 적절성 ○ 유지보수활동 및 범위의 적절성 	5점
계			70점

○ (참고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름

○ 평가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 관련 문의

○ 김도현(디지털통신융합본부 디지털통신융합사업팀)

061-350-1548 / dohyeon021@kca.kr

1. 입찰방식 : 중앙조달,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자(업종코드 : 0036)
-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세부품명번호 : 4322261901)를 제조 또는 공급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V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4호]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 립 년 도		사 업 분 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표지

2024년도 종합유선방송사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 사업
제안서

사업책임자 전화번호	
사업책임자 E-MAIL	